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 2016 ~ 55 발의일자 2016. 08. 23. 발 의 자 강철우의원외4명

1. 제안이유

○ 군민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(안 제1조)
- 나. 군수의 책무와 지원내용을 명시함(안 제2조, 안 제5조)
- 다. 인증 취득 및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인증기준의 관련 법령을 명시함(안 제4조)
- 마. 인증 사후관리 방법을 명시함(안 제6조)
- 바. 인증확산 및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, 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0조의2, 제13조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제17조의2,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
- 나. 예산조치: 2017년 7백만원 확보예정
- 다. 합 의: 기획감사실, 복지정책과
- 라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2016. 8. 26 ~ 9. 1
 - (나) 예고결과: 해당사항 없음
 - (4)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 붙임
 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군수의 책무)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.
 -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
 - 2.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
- 제4조(인증기준 등) 인증에 관한 사항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
- 제5조(인증취득 지원)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수수료의 50%(부가세 제외)를 지원할 수 있다. 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함께 별지서식의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6조(사후관리)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.
- 제7조(교육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복지,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
 - 2.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
- 제8조(홍보) 군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-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서식】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신청서

① 건 축 주		(연락처 :)	② 법· (생					
③ 건축물명					④ 건축	축물 용도				
⑤ 건축물 소재지										
인 증 내 역	⑥ 인증구분(지정일)	본인증 (20	년	월	일)	예비인증	(20	년	월	일)
	⑦ 인증기관									
	⑧ 인증 유효기간	(20 년	월	일브	부터 2() 년 월	일	.까지))	
⑨ 지원 신청액		금 원정								
⑩ 지원신청액 입금계좌		(금융기관) (계좌번호) (예 금 주)								

「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 취득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

거 창 군 수 귀하

구비서류 : 인증서 사본, 수수료 납부영수증 또는 송금영수증

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- 인증수수료 지원 : 제5조(인증취득 지원)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수수료의 50%(부가세 제외)를 지원할수 있다.
 - 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 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교육비 지원 : 제7조(교육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복지,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
 - 2.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
- 2. 미첨부 근거 규정 : 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제 4조제1항제1호
- 3. 미첨부 사유 :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,000천원 이하임
- 4. 작성자

복지정책과장 박 완 묵

관련법령

□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16.8.12.] [법률 제13805호, 2016.1.19., 타법개정]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

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(이하 이조, 제10조의5,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"보건복지부장관등"이라 한다)은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할수 있다.

-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·절차, 인증기관 지정 기준·절차, 인증 비용의 부담,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 령(이하 "공동부령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제13조(설치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.

제13조(설치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.

□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[시행 2016.8.4.] [법률 제13978호, 2016.2.3., 타법개정]

- 제17조의2(교통수단 등 인증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·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·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·절차 및 취소,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,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(제4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)으로 정한다.

□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

[시행 2015.8.3.] [보건복지부령 제344호, 2015.8.3., 일부개정] [시행 2015.8.3.] [국토교통부령 제224호. 2015.8.3.. 일부개정]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5항, 제10조의3제2항, 제10조의6제2항 및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8.3.>
- 제2조(인증 대상)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개별시설
 - 가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장애인 등편의법"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
 - 나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"교통약자법"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
 - 2.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·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[전문개정 2015.8.3.]
- **제8조(인증 기준 등)**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.
 - 1.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
 - 2. 평가항목별 목적, 방법, 배점, 산출기준,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
 -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·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